

옥천군 공고 제2021-92호

옥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1년 1월 29일

옥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

- 옥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

2. 개정이유

- 상위법인 「지방세법」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·보완하여 법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없고자 함

3. 주요골자

-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
 - 가. 균등분 중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개인분으로 변경(안 제5조)
 - 나. 사업자가 납부하는 개인사업자·법인 균등분,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(안 제6조, 안 제7조)

- 인용 법령 조항 변경(안 제6조제2항, 안 제8조제2항, 안 제10조제2항)

4. 의견제출

- 「옥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재무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: (043)730-3202, FAX: (043)731-2486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5. 붙임

- 옥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-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옥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1절의 제목 “균등분”을 “개인분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(균등분)”을 “(개인분)”으로 한다.

제3장제2절의 제목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재산분(이하 이 절에서 “주민세”라 한다)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, “(재산분)”을 “(사업소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0조”를 “납세의무자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9조”로, “같은 법 제51조”를 “같은 법 제50조”로, “별지 제5호서식”을 “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(재산분)”을 “(사업소분)”으로, “법 제83조제4항”을 “법 제83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종업원분(이하 이 절에서 “주민세”라 한다)”을 “종업원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0조”를 “납세의무자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9조”로, “같은 법 제51조”를 “같은 법 제50조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50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49

조”로, “같은 법 제51조”를 “같은 법 제50조”로, “하면”을 “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4호서식]

주민세(사업소분) 신고 및 납부 처리부

○○연도 ○○월분

(옥천군)

접수 일자	사업소명	납 세 의 무 자			사업소 소재지	면적	세율	세액	납부일	결 재		
		성명 (법인명)	주민(법인) 등록번호	주소						주무관	팀 장	과 장

※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.

364mm×257mm(일반용지 80g/㎡)

주민세(사업소분) 과세자료 처리부

○○연도 ○○월분

(옥천군)

과세 번호	사업소명	납 세 의 무 자			사업소 소재지	면적	세율	산출 세액	가산세	계	결의일	결 재		
		성 명 (법인명)	주민(법인) 등록번호	주소								주무관	팀 장	과 장

※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절 <u>균등분</u></p> <p>제5조(비과세 관리)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(<u>균등분</u>)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절 <u>재산분</u></p> <p>제6조(신고 및 납부 처리)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<u>재산분</u>(이하 이 절에서 “주민세”라 한다)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(<u>재산분</u>)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절 <u>개인분</u></p> <p>제5조(비과세 관리) ----- ----- -----<u>(개인분)</u>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절 <u>사업소분</u></p> <p>제6조(신고 및 납부 처리) ① ---- ----- ----- <u>사업소분</u>----- ----- -----<u>(사업소분)</u> 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납세의무자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9조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 제50조</u>----- ----- ----- <u>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</u>----- -----.</u></p>

② 납세의무자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----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9조-----
-- 같은 법 제50조-----
----- 하는 경우에는 ----

-----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규 칙 명 : 옥천군 군세 조례 기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규 칙 안	의 견